

문서번호	생활보장과-11 181
결재일자	2016.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보도여부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생활보장과장	주민생활국장
최민옥	유숙희	이승하	전결 03/28 강대형
협 조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운영 계획

2016.03.28.

강 북 구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운영 계획

청각장애인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적 성취감과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방향

-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지원
- 장애로 인한 소외감을 덜어주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제공

II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운영
- 교육기간 : 2016. 4월~12월
- 교육장소 : 강북구수화통역센터, 서울애화학교
- 교육대상 : 강북구 거주 청각장애인(인근 지역 주민 포함)
- 교육과정 : 공예특강, 수화교육, 컴퓨터특강, 네일아트
- 교육인원 : 실인원 26명, 연 702명
- 운영기관 : 강북구수화통역센터

III

세부사업계획

■ 과정별 교육일정

○ 직업적응교육과정① : 공예특강

- 2016년 3월 29일~11월 18일/ 총 16회/ 1회 2시간/ 총 32시간

제 목	일정	교육활동내용	강사/기관
직업적응교육 (공예특강)	3/29, 4/1	팽사각볼 만들기	백영희/ 애화학교
	4/15, 29	연잎, 잔, 접시 등 만들기	
	5/6, 20	다인 찬기 1호, 2호 만들기	
	6/10, 24	직선 필통, 다인 공기 만들기	
	7/1, 15	다인 대접, 생선접시 만들기	
	9/9, 30	손잡이형 다기 잔 만들기	
	10/7, 21	원형 신 냄비 받침 만들기	
	11/4, 18	물고기 풍경 리본 접시(소) 만들기	

○ 직업적응교육과정② : 수화특강

- 2016년 4월 8일~6월 24일/ 총 12회/ 1회 2시간/ 총 24시간

제 목	일정	교육활동내용	강사/기관
직업적응교육 (수화특강)	4월 8일~ 6월 24일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농수화 이해	강사미정 (섭외중)/ 애화학교
		농언어의 특성과 이해	
		문장 익히기/ 농수화 익히기	

○ 직업적응교육과정③ : 컴퓨터특강

- 2016년 4월 1일~6월 17일/ 총 10회, 30시간

제 목	일정	교육활동내용	강사/기관
직업적응교육 (컴퓨터특강)	4월 1일~ 6월 17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12시 1회 3시간	일러스트레이터 cs6 활용 및 구성	나희훈/ 애화학교
		플래시 cs6구성, 플래시 타임라인	
		편집디자인 및 선택과 변형으로 기본작업하기	
		선택과 변형으로 기본작업하기 1,2	
		레이어와 채널로 스킬 up하기, 실습	

- 직업체험교육과정① : 네일아트 입문반(시범)
 - 2016년 9월 6일~10월 27일/ 총 12회 36시간

제 목	일정	교육활동내용	강사/기관
직업체험교육 (네일아트 입문반)	9월 6일~ 10월27일 매주 화·목 오후1시~4시	손톱 쉐립 종류 및 그라데이션 칼라링	윤해심/ 강북구 수화통역 센터
		건식 매니큐어/ 풀 칼라링 (굳은살 정리 및 손톱 모양 다듬기)	
		건식 매니큐어/ 프렌치 칼라링	
		도트 아트 및 데칼 아트	
		스톤아트 및 칼라마블	
		Tips(프렌치팁, 레귤러팁)	
		실크 랩핑(찢어지거나 약한 손톱 보수법)	
		Art1(지브라, 호피 등)/ Art2(워터마블 등)	

※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IV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금8,262천원
- 예산과목 :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 분	소요예산(원)	산 출 근 거(단위 : 원)
합 계	8,262,000	
직업적응교육과정 (3개프로그램)	5,220,000	① 공예특강 3,360천원 강사비 30,000원×2시간×16회 = 960,000 통역비 30,000원×2시간×16회×2명= 1,920,000 재료비 5,000원×6명×16회 = 480,000 ② 수화교육 960천원 강사비 40,000원×2시간×12회 = 960,000 ③ 컴퓨터특강 900천원 강사비 30,000원×3시간×10회 = 900,000
직업체험교육과정 (1개 프로그램)	2,760,000	① 네일아트 입문반(시범) 2,760천원 강사비 30,000원×3시간×12회 = 1,080,000 통역비 30,000원×3시간×12회 = 1,080,000 재료비 8,333원×5명×12회 = 500,000 예비비 = 100,000
운영비	282,000	운영비(현수막제작, 간식, 기타운영비) 282,000

■ 기대효과

- 공예특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료후 전문공예회사, 조립회사, 개인사업 등 취업의 기회 마련
- 수화를 습득하지 못해 원활한 의사표현과 청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습득하게 하여 수화통역 지원을 통한 원활한 교육 지원
- 청각장애인 취업준비생을 위한 심신훈련을 통해 체력증진, 인내심 배양, 단결심 및 자신감 증진
- 교육활동을 통하여 서로간의 장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

붙임 1. 협약서 1부.

2.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계획서(시설 제출) 1부. 끝.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운영에 따른 협약서

강북구와 강북구수화통역센터(이하 “수화센터”라 한다)는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사업을(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강북구가 민간위탁사업인 「2016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수화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강북구가 “수화센터”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운영
2. 사업의 내용 :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사업
3. 협약기간 : 협약일 ~ 2016.12.31.
4. 2016년 지원금액 : 금8,262천원
5. 운영기관 : 강북구수화통역센터

제3조(사업범위) “수화센터”는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의 목적에 맞도록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교실 운영
 - 공예특강, 수화특강, 컴퓨터특강, 네일아트 입문반

제4조(사업계획) ① “수화센터”는 당해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화센터”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강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수화센터”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수화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운영규정에 정한 예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화센터”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수화센터”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사업비의 관리) “수화센터”는 「2016년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집행 등) ①강북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화센터”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수화센터”는 사업비를 강북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화센터”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④“수화센터”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제출) “수화센터”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강북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수화센터”는 강북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최종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화센터”의 사업비 정산서는 사용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은행 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 강북구는 “수화센터”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화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강북구는 “수화센터”에게 제2항의 수정·보완요구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화센터”에게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화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수화센터”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은 반납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수화센터”는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강북구는 사업과 관련한 “수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

②강북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수화센터”에게 요구하거나 강북구의 소속직원 또는 강북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화센터”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화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수화센터”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화센터”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화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북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화센터”는 이를 강북구에 지정기한 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강북구 또는 “수화센터”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강북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화센터”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2. “수화센터”가 사업수행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화센터”가 사업을 하도급 한 때
4. “수화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북구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때
5. “수화센터”가 사업추진을 포기한 때

③강북구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화센터”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수화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강북구에 청구할 수 없다.

⑤강북구는 “수화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및 해석) ①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강북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강북구와 “수화센터”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강북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2016년 3월 일

“강북구”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장 (인)

“수화센터” 주소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1길 7
강북구수화통역센터장 (인)